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철도안전법 개정(법률 제17239호, 2020. 4. 7. 공포, 2020. 10. 8. 시행)으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자율보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철도사고등 자율보고의 접수·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한편,

철도안전법 개정(법률 제17457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 10. 8. 시행)으로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부과 금액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강화 0건(철도운행 안전관리 강화)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철도사고 또는”을 “철도사고, 철도준사고 및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4조 제목을 “제44조(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)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81조제1항제10호”를 “법 제82조제1항제10호”로 하고, 제2항제3호 중 “법 제81조제1항”을 “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하며, 제2항제4호 중 “법 제81조제3항제3호”를 “법 제82조제2항제7호”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6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“법 제77조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27조의3 및 제7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6의9. 법 제61조의3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·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

제63조의3제1호 중 “제44조에 따른 탁송 및”을 “제44조에 따른 운송위탁 및”으로 한다.

제64조 중 “법 제81조”를 “법 제82조”로 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2조제2항 및 제63조제2항·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·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1 및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과태료 부과기준 (제6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[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](#)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(公衆)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
가. 법 제7조제3항(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호	300	600	900
나. 법 제7조제3항(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1호	150	300	450
다. 법 제8조제3항(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2호	300	600	900
라.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한 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 제1호	90	180	270
마.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2호의2	300	600	900
바. 법 제20조제3항(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3항 제4호	90	180	270
사.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2호	150	300	450
아.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 등	법 제82조제2항 제2호의2	150	300	450
자. 법 제26조제2항(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4호	300	600	900

차. 법 제26조제2항(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3호	150	300	450
카. 법 제26조의5제2항(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5호	300	600	900
타. 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6호	300	600	900
파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·열람·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7호	300	600	900
~~파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·열람·수거 등을 기피하는 경우~~	~~법 제81조제1항 제7호~~	~~25~~	~~50~~	~~100~~
하.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8호	300	600	900
거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·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9호	300	600	900
너.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않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4호	150	300	450
더. 법 제38조의5제3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(단, 제1호의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2	300	600	900
러. 법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5호	150	300	450
~~러. 법 제38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위조·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~~	~~법 제81조제1항 제9호의2나목~~	~~125~~	~~250~~	~~500~~
~~머. 법 제38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~~	~~법 제81조제1항 제9호의2다목~~	~~25~~	~~50~~	~~100~~

우				
머.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 고 변경한 경우는 자	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3	300	600	900
버.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82조제2항 제6호	150	300	450
서. 법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 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4	300	600	900
어. 법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9호의5	300	600	900
저.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0호	300	600	900
처.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 록장치를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자	법 제82조제1항 제10호의2	300	600	900
커. 법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한 자	법 제82조제2항 제7호	150	300	450
커.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1조제3항 제3호	30	70	150
터.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1조제3항 제3호	100	200	300
퍼.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	법 제81조제3항 제3호	30	70	150
허.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	법 제81조제3항 제3호	30	70	150
코.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	법 제81조제3항 제3호	100	200	300
티.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5항 제1호	15	30	45
퍼. 법 제47조제1항제1호·제3호를 위반 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	법 제82조제1항 제8호	150	300	450
허.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	법 제82조제4항	30	60	90

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	제1호			
고. 법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 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	법 제82조제5항 제2호	15	30	45
노.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(선로는 제외한다)에 승낙 없이 출입하 거나 통행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9호	150	300	450
도.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 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	법 제82조제4항 제2호	30	60	90
로. 법 제48조제7호·제9호 또는 제10호 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 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 우	법 제82조제2항 제10호	150	300	450
모.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 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3호의2	300	600	900
보.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을 위한 기준·방법·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11호	150	300	450
소.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 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4호	300	600	900
오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5호	300	600	900
조.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 제12호	150	300	450
초. 법 제61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5호	300	600	900
토. 법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81조제1항 제15호의2	150	300	600
코.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	법 제82조제1항 제16호	300	600	900

~~호.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 로 한 경우~~	~~법 제81조제1항 제16호~~	~~25~~	~~50~~	~~100~~
토.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 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7호	300	600	900
포.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 제18호	300	600	9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) (생략)	제3조(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) (현행과 같음)
1. <u>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</u> (이하 "철도사고등"이라 한다)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·수습·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	1. <u>철도사고, 철도준사고 및</u> ---- ----- ----- ----
제12조(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) ① (생략)	제12조(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11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	<u><삭 제></u>
1. ~ 5. (생략)	
제44조(<u>탁송</u>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) 1. ~ 5. (생략)	제44조(<u>운송위탁</u>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) 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62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	제62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법 제81조제1항제10호</u>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	2. <u>법 제82조제1항제10호</u> ----- -----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47조제1항제1호·제3호 · 제4호 또는 제7호, 법 제48 조제5호·제7호·제9호·제1 0호,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<u>법 제81조제1항</u>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4. 법 <u>제81조제3항제3호</u>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제63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1. ~ 6의8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<u>법 제77조 제2항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. 1. ~ 9. (생략) ③ (생략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<u>법 제77조 제2항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 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</u>----- 4. 법 <u>제82조제2항제7호</u>----- ----- 제63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6의8. (현행과 같음) <u>6의9. 법 제61조의3에 따른 철도 안전 자율보고의 접수·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</u> ② -----<u>법 제27조의3 및 제77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법 제27조의3 및 제77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1. ~ 2. (생 략) 제63조의3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44조에 따른 <u>탁송</u>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: 2017년 1월 1일 2. (생 략) 제64조(과태료 부과기준) <u>법 제81조</u>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	1. ~ 2. (현행과 같음) 제63조의3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운송위탁</u> --- ----- --- 2. (현행과 같음) 제64조(과태료 부과기준) <u>법 제82조</u>에 ----- --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603